

교직원 역량개발 규정

- 제정 : 2017. 8. 31.
- 개정 : 2019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이 규정은 본교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 한다.

제3조(내용) 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외부 연수, 세미나, 및 교내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역량 개발교육 등으로 한다.

- ② 본교의 발전 및 교직원 역량개발 증진을 위한 국내 및 해외 우수대학 벤치마킹 등으로 한다.

제4조(시기)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.

제5조(예산 및 경비) ① 모든 역량개발 지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② 외부 연수, 세미나 경비는 주최측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③ 외부 연수, 세미나 출장비는 본교 출장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.
- ④ 하계 및 동계에 실시하는 교원 산업체 현장연수에 대한 경비는 10만원으로 연수지원비를 지급한다.

제6조(결과보고) 국내외 교육 및 연수, 세미나 등을 실시한 자는 3일 이내에 출장비 규정 제5조 <서식 2호>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. 다만, 교내에서 실시한 교육 등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제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